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2호 2016. 1. 13(수)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6-7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32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6-7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13.

사 천 시 장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민과 관이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32호(3)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중앙부처 재정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관계 행정기관인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의 시장·군수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장 1명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간사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회장) ① 회장은 진주시, 광양시, 창원시, 함안군, 하동군, 김해시, 사천시, 순천시 순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역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32호(4)

④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 소속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 의 회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 원
2.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장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남도순례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 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32호(5)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정기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협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회장은 협의회 회의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 처리)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32호(6)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 규정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